

구 보

◆ 차 례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1-1651호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1-1653호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 시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1-197호 :
신성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정정 고시

<이면없음>

공												
람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서 초 구

※ 이 구보는 서초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http://www.seocho.go.kr>-열린구청-행정정보-서초전자구보)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1-165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021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1. 개정이유

상위법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민원인 권익보호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세부 조문을 보완하여 조례의 효율성과 적합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법령의 근거 없이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상위법과 달리 정한 조항 삭제 (안 제11조)
- 나. 띄어쓰기 등 용어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초구청장(참조 : 도시디자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oo1@seocho.go.kr

2)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21, 양재주차빌딩 402호 도시디자인과

3) 팩스 : 02)2155-8387

※ 의견서 제출 시 02)2155-5307으로 유선연락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 도시디자인과(전화 : 02-2155-530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안은 서초구 홈페이지(<http://www.seocho.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관련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를 “관련 법령 등에 따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법령 등에”를 “조례에 특별한”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공공조형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를 “공공조형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로 한다.

제11조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6. “설치승인”이란 공공조형물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u>관련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u> 받아야 하는 승인을 말한다. 7. · 8. (생 략)	제2조(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6. ----- ----- <u>관련</u> <u>법령 등에 따라</u> ----- -----. 7. · 8. (현행과 같음)
제3조(<u>다른 법령과의 관계</u>)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u>법령 등에</u>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전시나 행사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u>다른 조례와의 관계</u>) ---- ----- ----- <u>조례에 특별한</u> ----- ----- -----. ----- ----- -----.
제4조(공공조형물 설치신청) ① · ② (생 략) ③ <u>공공조형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u> 서초구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하고,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제4조(공공조형물 설치신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공공조형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u> ----- ----- ----- ----- -----.

제11조(이의신청 등) ① 설치주체는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한차례에 한한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서초구 도시디자인과	
연 락 처	(02) 2155 - 5307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법규명 :

○ 성명(개인·단체·법인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개정안 내용	의견	비고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1-16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021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1. 개정이유

상위법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민원인 권익보호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세부 조문을 보완하여 조례의 효율성과 적합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법령의 근거 없이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상위법과 달리 정한 조항 삭제
- 나. 띄어쓰기 등 용어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초구청장(참조 : 도시디자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합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nago@seocho.go.kr

2)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21, 양재주차빌딩 402호 도시디자인과

3) 팩스 : 02)2155-8387

※ 의견서 제출 시 02)2155-6194으로 유선연락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 도시디자인과(전화 : 02-2155-619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안은 서초구 홈페이지(<http://www.seocho.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제4호가목 중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제2조제1호”를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제9조제1항 본문 중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제20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4호 중 “관계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u>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u>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u> --- ----- ----- ---.
제5조(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u>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u>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u>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u> ----- ---- <u>한다</u> -----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구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디자인 사업의	4. ----- -----

제6조에 따른 가이드라인 및
제21조에 따른 심의기준 준수
여부

가.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
결디자인 조례」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

나. (생략)

다.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
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5. ~ 9. (생략)

② (생략)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
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
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
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
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략)

--

가.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
결디자인 조례」 제2조제1호

나. (현행과 같음)

다.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
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5.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

---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
법」 제21조제2항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0조(공공디자인 심의절차)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
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위원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생략)

제21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제8조제1항에 대한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갖추고, 통합적 관점에
서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

5. · 6. (생략)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제20조(공공디자인 심의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

1. ~ 3. (현행과 같음)

4. -----

----- 관계 기관 -----

5. · 6. (현행과 같음)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서초구 도시디자인과	
연 락 처	(02) 2155 - 6194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법규명 :

○ 성명(개인·단체·법인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고 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1-197호

신성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정정 고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6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으나,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에 대한 내용에 오기가 있어, 일부 내용을 정정하고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1. 9. 16.

서 초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신성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593-98번지 외 3필지
 - 나. 정비구역의 면적 : 4,882.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방배동 신성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대표 임승휘)
 -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297길11, 가동 312호(방배동, 신성빌라)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20. 12. 8.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 1) 대지면적 : 4,880.0㎡
 - 2) 지하2층/지상6층,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연립주택) 5개동(90세대)
 -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공급대상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															
	계	50.84	60.17	63.80	64.48	65.76	67.76	67.32	67.04	69.24	68.89	68.36	69.94	69.82	81.06	84.66
계	90	5	1	1	5	1	5	5	5	36	5	5	8	2	3	3
토지등소유자	65	3	1	1	2	1	1	4	2	33	2	1	8	2	1	3
보류시설	2	-	-	-	-	-	1	-	-	-	-	1	-	-	-	-
일반분양	23	2	-	-	3	-	3	1	3	3	3	3	-	-	2	-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 명세 : 해당없음

라. 기존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 2021. 3. ~ 2021. 4.

※ 관계서류는 서초구청 주거개선과(☎02-2155-734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